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9
----------	------

제출연월일: 2018. 11. 8.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법령과 조례의 규정 내용이 상이하거나 상위 법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조례 규정이 상이한 금액 개정: 조례 [별표 1] 개정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무료

나. 상위법령 개정: 조례 [별표 4]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무료

3. 근거법규

가.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18. 7. 23. ~ 2018. 8. 13.(의견 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수수료 (원)
1. 증명 등		
가.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	1통	300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통	1,000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등·초본	1매	300
초 과	1매당	100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 증명서	1통	무료
(2)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통	800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칼라발급	1,000 1,500
(2) 관할 시·군·구가 아닐 경우	1통	2,000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가. 건설관계		
(1) 비관리청 공사허가 및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소하천 점용허가(용지보상비 제외)	1건	공사비의 1천분의1
(2)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천분의1
(3) 기타 소하천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이나 농업을 목적 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천분의1
(4) (1),(3)호의 변경(물량증감, 명의) 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천분의1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	1건	500

구 분	기 준	수수료 (원)
(7) 체비지확인(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500
(8)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에 관한 증명	1건	500
나. 보건사회관계		
(1) 위생용품제조업 등		
(가) 위생처리업		
신 고	1건	15,000
변 경	1건	10,000
(나) 세척제 제조업		
신 고	1건	18,000
변 경	1건	15,000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 고	1건	15,000
변 경	1건	10,000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허 가	1건	100,000
변경허가(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
(3) 의원, 치과(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개설		
신 고	1건	40,000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20,000
(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양도·양수포함)	1건	1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양도·양수포함)	1건	10,000

구	분	기 준	수수료 (원)
다. 문화체육관계			
(1)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30,00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0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허가 등록업			
	신고·허가·등록	1건	20,000
	변경신고·변경허가·변경등록	1건	5,000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 등록업			
	신고·등록	1건	20,000
	변경신고·변경등록	1건	10,00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등록업			
	신고·등록	1건	20,00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변경등록	1건	5,000
	신고·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구 분	기 준	수수료 (원)
(5) 체육시설업		
신 고	1건	30,000
변경신고	1건	10,000
(6) 공연법		
등 록	1건	10,000
변경등록	1건	5,000
라. 주택가격 관계		
(1)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	800
	1개년도 추가마다	100
마.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1개년도 추가마다	1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개인	1건	20,000
법인	1건	30,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
(4) 부동산중개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5) 부동산중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
(7) 비주거용 개별(집합) 부동산 가격 확인서	1건	800
	1개년도 추가마다	100
바. 공증업무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일자 부여	1건	600
사. 회계관계		
(1) 입찰참가 신청(다만, 전자입찰 참가 신청은 제외한다)	1건	10,000

구	분	기	준	수수료 (원)
아.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서	1건		6,000
	(2)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1건		1,500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1건		1,500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5)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자.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1건		20,000
차.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
	(3) 일반판매소 신고	1건		10,000
카. 재산관리관계				
	(1)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신청에 관한 증명 신청에 관한 증명	1통		300
	(2) 국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
	(3) 국유재산 대부(연장) 신청	1건		3,000
	(4) 국유재산 계속대부 또는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신청	1통		300

[별표 4]

정 보 공 개 수 수 료(제3조제3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중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중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화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중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 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가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구 분	기준	수수료(원)
1. 증명 등 가.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등·초본 초 과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신 설>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관할 시·군·구가 아닐 경우			1. 증명 등 가.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등·초본 초 과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 증명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관할 시·군·구가 아닐 경우		
	1통	300		1통	300
	1통	1,000		1통	1,000
	1매	300		1매	300
	1매당	100		1매당	100
	1통	800		1통	무료
				1통	800
	1필지	1,000		1필지	1,000
	칼라발급	1,500		칼라발급	1,500
	1통	2,000		1통	2,000

현행		개정안			
<p>【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p>		<p>【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p>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p>열람·시청</p> <p>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p>		<p>열람·시청</p> <p>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p>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단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근 거 법 규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 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비용은 별도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수신 세무2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1. 세무2과-11659(2018.7.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성청소년과장

주무관	여성가족계장	여성청소년과 전결 2018. 7. 16. 장
협조자		
시행	여성청소년과-27315	접수
우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복산동, 중구청)	/ http://www.junggu.ulsan.kr
전화번호	290-4903	팩스번호 290-4909 / youngaja@korea.kr / 대국민 공개
울산큰애기와 함께하는 울산중구 여행		